

의안번호	2217431
의 퇴 인	박용갑 의원
회 답 일	2026. 3. 26.
추 계 번 호	26E14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택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,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감면 등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7년 2,825억원 등 2027~2029년 3년간 총 8,754(연평균 2,918억원)으로 추계
- 부가가치세 총 5,717억원(연평균 1,906억원) 감소
 - － 지방소비세 총 1,936억원(연평균 645억원) 감소
 - 개별소비세 총 958억원(연평균 319억원) 감소
 - 교육세 총 143억원(연평균 48억원) 감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교육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합계	-2,825	-2,916	-3,013	-8,754	-2,918
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연장 (안 제106조의7)	-2,445	-2,550	-2,659	-7,653	-2,551
－ 부가가치세 (74.7%)	-1,826	-1,905	-1,986	-5,717	-1,906
－ 지방소비세 (25.3%)	-619	-645	-673	-1,936	-645
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(안 제111조의3)	-380	-367	-354	-1,101	-367
－ 개별소비세	-331	-319	-308	-958	-319
－ 교육세	-49	-48	-46	-143	-4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6조의7 (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)	○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－ (현행) 2026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	－
2	안 제111조의3 (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)	○ 택시연료용 부탄석유가스(LPG Butane)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－ (현행) 2026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	－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6조의7(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)	○	-
2	안 제111조의3(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6년중 통과되어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
- 제도 변화로 인한 행태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회사택시 기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% 경감
 - 1995년 당시 「조세감면규제법」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50% 경감하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도입·시행되었으며, 이후 경감율이 90%(2009년 시행), 95%(2015년 시행), 99%(2018년 시행) 등 지속 인상

□ (실적)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1년(-11.7%)을 제외하고는 증가 추세

- 택시운전자수는 코로나19로 급감한 이후 2021년 이후 24만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,¹⁾ 2023년 2월 택시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 요인으로 관련 조세지출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

[표 2]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조세지출 실적: 2018~2025년
(단위: 억원)

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 ¹⁾
부가가치세	1,877	2,012	2,022	1,786	1,835	2,067	2,219	2,248

주: 1) 정부 전망치

자료: 정부의 각년도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향후 추계기간 동안 최근 2년간(2023~2025년) 조세지출 평균 증가율(4.3%)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(3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7년 2,445억원 등 2027~2029년 3년간 총 7,653억원(연평균 2,551억원)으로 추계

- 부가가치세 총 5,717억원(연평균 1,906억원) 감소
- 지방소비세 총 1,936억원(연평균 645억원) 감소

1) (택시운전자수) '18년말 27만명→'20년말 25만명→'21년말 24만명→'22년말 24만명→'26년초 24만명
(자료: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)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연장 (안 제106조의7)	-2,445	-2,550	-2,659	-7,653	-2,551
- 부가가치세 (74.7%)	-1,826	-1,905	-1,986	-5,717	-1,906
- 지방소비세 (25.3%)	-619	-645	-673	-1,936	-645

나.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□ (제도개요)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 사업 자동차용 부탄석유가스(LPG Butane)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*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 감면**

* 교육세는 부가세로 개별소비세액의 15%에 부과

** '감면'으로 규정되어 있으나, 실제로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준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유류구매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액 환급을 신청하여 기납부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 받는 절차

- 연료비 부담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택시운송종사자의 경제난 개선 목적에서, 도입시행된 2008년 5월부터 2010년까지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제하였다가 2011년부터는 킬로그램당 40원 감면

□ (실적) 택시연료용 부탄석유가스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은 감소 추세

- LPG 택시 대수가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는 가운데,²⁾ 2020~2021년 기간의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('20년 3월 실시)으로 인한 이동수요 감소 등으로 큰 폭의 감소율('20년 -13.5%, '21년 -8.3%)을 보인 것으로 추정

2) '18년말 41.5만대→ '22년말 33.1만대→ '25년말 25.4만대 (자료: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)

[표 4] 택시연료용 부탄석유가스 조세지출 실적: 2018~2025년

(단위: 억원)

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 ¹⁾
개별소비세	535	519	449	412	401	380	368	355
교육세	80	78	67	62	60	57	55	53
합계	615	597	516	473	461	438	423	408

주: 1) 정부 전망치

자료: 정부의 각년도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택시연료용 부탄석유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향후 추계기간 동안 최근 2년간(2023~2025년) 조세지출 평균 감소율(-3.5%)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7년 380 억원 등 2027~2029년 3년간 총 1,101억원(연평균 367억원)으로 추계
 - 개별소비세 총 958억원(연평균 319억원) 감소
 - 교육세 총 143억원(연평균 48억원) 감소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개별소비세, 교육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(안 제111조의3)	-380	-367	-354	-1,101	-367
- 개별소비세	-331	-319	-308	-958	-319
- 교육세	-49	-48	-46	-143	-48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